

	직제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4. 4. 3.
		최종개정일자	2022. 4. 1.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에 따른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의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이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구) 대학의 기구 및 부서별 편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원) 대학 직제의 정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교원 및 직원

제5조(총장, 부총장, 교원, 직원 등) ①대학에 총장 1인을 두며, 총장은 대학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②부총장 1인을 두며,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궐위 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9.30>

③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되, 그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④직원은 일반직, 계약직, 임시직으로 하되, 각각에 대한 직급별 정원은 「법인정관」 제81조 <별표 2>에 의하며,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조교는 학과 사무를 보조하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교원 및 직원, 조교 외에 필요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시간강사와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대학본부

제6조(대학본부) ①대학에 기획산학처, 교무입학처, 교육혁신처, 행정지원처 외에 별도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4.9.30><개정 2015.2.26><개정 2016.2.19><개정 2022.4.1>

②행정지원처장은 5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기획산학처, 교무입학처, 교육혁신처는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5.2.26><개정 2016.2.19><개정 2022.4.1>

- 제7조(기획산학처)** 기획산학처에는 처장 외에 과장과 직원을 둔다.<개정 2022.4.1>
- 제8조(교무입학처)** 교무입학처에는 처장 외에 과장과 직원을 둔다.<개정 2016.2.19><개정 2022.4.1>
- 제9조(행정지원처)** 행정지원처에는 처장 외에 과장과 직원을 둔다.<개정 2016.2.19>
- 제10조(산학취업처)** <개정 2016.2.19><삭제 2022.4.1>
- 제11조(교육혁신처)** 교육혁신처에는 처장과 직원을 둔다.<개정 2016.2.19><개정 2022.4.1>
- 제12조(평생직업교육처)** <개정 2015.8.3><삭제 2022.4.1>
- 제13조(대외협력처)** <삭제 2016.2.19>
- 제14조(NCS지원센터)** <신설 2014.9.30.><삭제 2022.4.1>
- 제15조(취업창업지원처)** <삭제 2016.2.19>
- 제16조(시설안전처)** <삭제 2016.2.19>
- 제17조(학교기업운영위원회)** <개정 2016.8.31.><삭제 2022.4.1>

제4장 학 과

제18조(학과)

- ① 각 학과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과장 을 둔다.<개정 2016.2.19>
- ② 학과장은 해당 학과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2.19>
- ③ 설치 학과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2.19><개정 2022.4.1>

제5장 부속기관

제19조(도서관)

- ① 도서관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전문사서와 직원을 둔다.
- ② 도서관 직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정보관리소) <삭제 2022.4.1>

제21조(국제교류원)

- ① 국제교류원장은 교직원으로 보하고, 직원을 둔다.
- ② 국제교류원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건강증진센터)

- ① 건강증진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생활관)

- ① 생활관장은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고, 직원을 둔다.<개정 2016.2.19>
- ② 생활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어학교육원)

- ① 어학교육원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직원을 둔다.
- ② 어학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25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직원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부설기관

제26조(부설기관) ① 대학에 각종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
 2. 홍보실<삭제 2014.9.30>
 3. 지역사회연구소<삭제 2022.4.1>
 4. 지역보건연구소<삭제 2022.4.1>
 5. 학생상담센터
 6. 장애학생지원센터
 7. 학교기업<삭제 2014.8.31>
 8. 리모델링디자인연구소<삭제 2015.2.10.>
 9. 평생직업교육연구소<신설 2014.12.11.><삭제 2022.4.1>
 10. 도시디자인연구소<삭제 2022.4.1>
- ② 부설기관의 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부설기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7조(위원회 설치·운영)

- ① 학사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8조(보직교원의 임기) 각 보직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부서신설) 총장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학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제30조(사무분장) 대학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4.1〉

대학기구 및 편제

총장							
	대학 평의회	교수회	제 위원회				
부총장							
대학본부							
	기획 산학처	교무 입학처	교육 혁신처	행정 지원처			
학 과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	미래융합 학부	
	간호학과	물리 치료과	치기공과	요트건축 디자인융 합과	웰빙복지 융합과	사회 복지과	운동 건강과
	임상 병리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전기과	평생교육 복지학과	유아 교육과	유투브 크리에이 터학과
	보건 행정과	식품 영양학과	토목 조경과		뷰티 미용과		
부속/부설							
	도서관	생활관	신문 방송국	평생 교육원	국제 교류원	어학 연구원	교수학습 지원센터
	건강증진 센터	장애학생 지원센터	학교기업				
산학 협력단							